

「금촌역 신일해피트리 더루츠」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각 기관별 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신청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당 사업지는 사이버 홍보관으로만 운영될 예정이므로 견본주택은 건립되지 않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내 마감재 리스트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031-943-4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일정(예정)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29-12외 24필지
- 공급규모 : 지하 4층 ~ 지상 26층 2개동 총 300세대 중 일반분양 1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3월말 예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주택 구분	주택형	타입	총 공급 세대수	주택 공급면적(m ²)			배정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42.3272	42	47	42.3272	18.9561	61.2833	4
	57.3187	57	73	57.3187	21.8075	79.1262	7
	59.7155	59	28	59.7155	22.0831	81.7986	2
합계			148	-	-	-	13

※ 사업인허가 진행에 따라 공급일정, 세대수 등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구분		42		57		59		합계		
		대상	(예비)	대상	(예비)	대상	(예비)	대상	(예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3)	1	(3)	1	(3)	3	(9)	
	장기복무 제대군인	1	(3)	1	(3)	1	(3)	3	(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6)	2	(6)	-	-	4	(12)	
	장애인	경기도	-	-	1	(3)	-	-	1	(3)
		서울특별시	-	-	1	(3)	-	-	1	(3)
		인천광역시	-	-	1	(3)	-	-	1	(3)
	합 계		4	0	7	(21)	2	(6)	13	(39)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는 예비당첨자입니다.

■ 분양일정(예정)

구분	일자 (예정)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1년 10월 28일(목)	금촌역 신일해피트리 더루츠 홈페이지 (http://www.금촌역신일더루츠.com)
사이버 홍보관 오픈	2021년 10월 29일(금)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회신	2021년 11월 04일(목)	※ 당사 담당자에게 명단송부(공문참조)
특별공급 접수일시	2021년 11월 08일(월)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사이트를 통한 청약 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청약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당첨자 및 등·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21년 11월 16일(화)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조회가능

- ※ 대상자 명단회신 : 해당기관에서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회신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 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명단회신 일정 및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बैं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30분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홍보관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 (10:00~14:00 / 은행창구접수 불가)가 가능합니다. 홍보관 방문 시 예약 후 입장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반드시 청약신청 하셔야 됩니다
-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청약통장 자격요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청약예금 :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파주시 및 경기도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상기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자격 확인'은 국방부에서 최대 5회 까지 추천 가능.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이 아닌 자.(단, 철거민 대상자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제35조부터 제49조 까지(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 물량이 남은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는 유형별 구분 없이 타입별 배정물량의 3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III 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및 분양권등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 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 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모두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세대원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특별공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사이버 홍보관(홈페이지) <http://www.금촌역신일더루츠.com> 및 안내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특별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자모집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필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및 사이버 홍보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